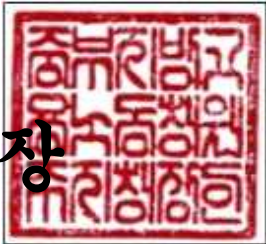
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통지서를 등을 발송하였으나,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4. 3. 25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장



- 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통지
- 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,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6조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송달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유O성	1998.01.07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결정	의무출석일 미방문 및 연락두절	①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② 종료 결정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취업지원 신청 제한(3년간 재참여 제한)	폐문부재, 연락두절	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치악로 (이하생략)

- 4. 공고기간: 2024.3.25. ~ 2024.4.8.(15일간)
- 5. 기타사항은 원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김선녀(Tel. 033-769-091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